

저작권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2

문헌: 저작권

권호: 19호 (1992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8]

I. 서론

저작권보호의 국제적 동향을 간략히 말한다면, (i) 새로운 저작물의 등장과 (ii) 저작권 종류의 다양화 그리고 (iii) 저작물이용관계의 효율화 등에 관한 저작자와 저작물이용자 그리고 저작권관련업계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작업과 그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우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외국의 동향과 병행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저작권관련 상품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짐에 따라서,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협상의 진행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루과이 협상 가운데 저작권관련 협상은 주로 베른(Berne)협약상의 저작권 보호기준에 상응하는 보호를 최소한의 보호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기준을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로 선진국이 자국의 높은 저작권 보호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다. 베른협약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준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서의 그것보다 더 자세하고 높은 것이어서, 우루과이협상에서의 논의는 베른협약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높은 저작권 보호기준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른협약 자체에서 결여되어 있는 효과적인 집행절차를 무역에 관한 GATT의 집행절차에 의해서 보완하고 국제무역에서의 베른협약의 준수를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우루과이협상은 베른협약에 대한 논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발표는 베른협약의 내용과 그 개정에 관한 간략한 검토에 한정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저작물의 등장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흔히 문학, 예술 및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그러한 저작물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하다. 특히, 각국의 국내법과 저작권관련협약에 공통된 현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저작물 이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

[19]

로운 저작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저작권이 인정되어 왔고, 그에 상응한 법규정이 신설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진,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음반, 방송저작물, 유선방송프로그램 등과 그에 관련된 규정등이 그 예이다. 예컨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약 40개국 가량 되는데, 이들 국가 가운데에서 음반을 저작권접권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통상의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만도 약 12개국에 달하게 되었다.주1) 그리고, 저작권 관련 협약에 있어서는 우선, 세계저작권협약이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은 베른협약이 열거하고 있는 저작물보다 훨씬 적어서 세계저작권협약하에서 회원국이 보호할 저작물의 종류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회원국이 세계저작권협약하에서 저작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그러한 저작물은 소수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저작물의 보호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베른협약이 현재 세계저작권협약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회에 걸친 베른협약의 개정에서 예시 저작물이 증가하게 된 결과인 것이다. 예컨대, 베른협약의 회원국들은 사진과 영상저작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종전의 논쟁을 마감하기 위해서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 협약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의 하나로 사진과 영상저작물을 추가해서 예시하게 되었다.

본래 예술적인 저작물을 찍은 사진에 관해서는 1886년 베른협약의 부속합의서에서 일종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사진 일반에 대한 보호여부는 불분명했었고, 그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사진이 베른협약하의 저작물의 하나로 열거되었다고 해서 사진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우선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회원국 입장이 아직도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이 일반적으로 낮아서, 사진의 경우에도 직업적 사진가의 사진 뿐만아니라 가족끼리 휴일을 즐기다가 아무런 전문기술도 없는 가족일원이 자신의 휴일장면의 하나를 찍은 사진도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 반해서, 독일에서는 사진의 창작성에 따라서 보호수준을 달리 하다가 1986년 개정에서 소위 "예술적" 사진은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지만, 특정 사실이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사진은 공표된 날로부터 50년동안만 보호되고, 그 이외의 사진은 공표된 날로부터 25년 동안만 보호된다고주2) 하는 커다란 차이가 현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베른협약 등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열거되는 저작물의 증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베른협약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의 베른협약상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원국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나중에 살펴보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혹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상당수의 회원국에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20]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주3) 이러한 주장의 주된 근거로는, 상당수의 회원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취급하는 관행을 형성하고 그러한 국가간 관행이 협약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4) 그러나, 협약 해석의 자료가 되는 관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회원국 사이에 동일한 관행이 있음이 입증되어

야 할 것인데,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있어서는 초기에 미국과 독일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을 부인한 판례도 있었고, 또한 현재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서 명백히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의 선진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관행에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조약(안)을 마련한 것도 컴퓨터프로그램이 기존의 베른협약상의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주5) 특히, 베른협약에 관한 부속협약(Treaty Supplementing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의 준비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부속협약시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고 그에 관련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도 현행의 베른협약이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주6)

Ⅲ. 저작권 종류의 다양화

저작자는 전통적으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도 이러한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베른협약의 개정 역사를 살펴보면 매 개정시마다 새로운 저작권이 추가되어 오늘날 세계저작권협약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저작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예컨대, 1886년 원래의 베른협약은 번역권과 q번역물의 공연권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08년 베를린 개정에서 음악저작물의 영상저작물로의 각색권과 음반 등으로의 제작권이 추가되었고, 1928년 로마 개정에서는 방송권과 저작인격권이,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는 공연권과 개작권이 그리고 1967년 스톡홀름 개정에서는 일반적인 복제권이 각각 추가되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른협약에 관한 부속협약 시안은 기존의 저작물을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게 되어서 협약상의 복제의 개념도 기술발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주7) 이와 같이 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된 저작권은 최소한의 보호기준으로서, 회원국은 외국저작물에 대해서 그러한 최소한의

[21]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실제적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번역권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려는 나라는, 베른협약의 1928년 로마 개정에 의해서 허용된 바와 같이, 협약가입시에 번역권에 관한 임시적인 유보를 선언 할 수 있는 데, 이와 같이 번역권에 관한 유보를 선언한 나라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이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신회원국에 의해서 번역권이 임시적으로나마 적절히 보호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신회원국의 국민의 저작물이나 그곳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회원국에서 번역권에 관한 상응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주8) 또한, 베른협약은 1948년 브뤼셀 개정에서, 예술작품의 원작품이나 저술가와 작곡가의 원고와 악보의 양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판매 이익의 일부를 그 원작자, 저술가 또는 작곡가가 분배받을 수

있는 소위 추급권이 기존의 저작권에 추가되어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추급권은 각 회원국이 국내 저작권법에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고, 주9) 추급권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인정된 저작권이지만 베른협약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저작권으로서 우선 도서대여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도서대여권도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내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10) 영국에서는 도서대여권(the Public Lending Right)이 별도의 입법에 의해서 주11) 부여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도서대여의 대가가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물 이용자가 아니라 일반 납세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영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하는 주장이 많다. 주12) 특히 스웨덴 등의 북유럽에서와 같이 도서대여의 대가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그 분배도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극빈한 작가나 은퇴한 작가에게 분배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도서대여권을 저작권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더욱 불분명하다. 주13)

도서대여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반 등의 대여에도 적용된다. 현재의 베른 협약 등에 대여를 포함한 배포에 관한 권리(Distribution)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물론, 베른협약에도, 영상저작물의 배포에 관한 권리라거나 소위 추급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압류를 인정하는 한도에서, 주14) 배포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배포권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은 없다. 베른협약 등에 배포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더라도, 대부분의 국내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배포되면 저작권자는 그와 같이 일단 배포된 저작물의 재판매 등의 추후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소위 "저작권소진(Exhaustion)"이라거나 "최초판매

[22]

(First sale)"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어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반드시 대여업자에 의한 대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한 베른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개정이 있기 이전에는, 주15) 회원국은 대여권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인정해야 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대여업자에 의한 대여를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의 남용 또는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를 초래할 위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대여권이 베른협약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저작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더라도, 베른협약의 개정이 없는 한, 일반공중에 대한 대여권을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할 의무도 없고 대여권이 인정되어 있는 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인정해 줄 의무가 없다.

IV. 저작물 이용관계의 효율화

어떠한 법제도이든지 그 위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규제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법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수의 소액 저작물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저작자는 창작의욕을 잃고 차라리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려고 할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저작물 이용자로서 항상 저

저작권침해의 죄의식 속에서 불안감을 안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법 운영 또는 저작물 이용관계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저작권 분쟁을 중재나 조정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중재나 조정이 법원에 의한 재판보다는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제도로서 저작권집중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제도라거나 법정이용허락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베른협약은 현재 이러한 저작권집중관리나 법정이용허락제도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저작물의 저작권자도 본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이용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지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되는 특정 회원국의 법정이용허락제도가 베른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되어 베른협약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협약 개정의 논의가 많다. 특정의 법정이용허락제도가 협약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국내법상의 제도를 다른 회원국의 저작물에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복제도 법정이용허락의 일부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이용대가를

[23]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주16) 이러한 이용대가를 받을 권리도 저작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프랑스에서는 별도 입법에 주17) 의해서 복제기기의 판매 또는 수입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한 세금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데, 그러한 세금분배는 오로지 프랑스 저작권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복제기기에 대한 세금도 저작물이용자가 지급하는 이용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국의 도서대여의 대가와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별도의 권리라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V.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저작물이 등장하고 저작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에도 반영되어 왔지만, 협약에의 반영은 회원국들의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 1971년 베른협약은 추급권과 같이 선택적인 저작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반적인 저작권 보호수준이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보다 결코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내용과 그의 철저한 집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른협약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베른협약에 규정된 외국저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내국민대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베른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그러한 경우는 없지만, 만일 특정의 입법조치가 필요했다면)를 취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외국인의 저작권에 대한 협약상의 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

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저작물의 보호와 저작권집행의 문제는 당해 외국인 개인 차원의 문제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게 된다.

외국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면, 외국 저작물도 내국민의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따라서 보호하는 것이 더욱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각 저작권조약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국제사법상 소위 법정지법(the Lex Fori)주의가 외국 저작물 보호에 적용된 결과이고, 또한 문제된 나라의 법앞에 내국민과 외국인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내국민대우를 받는 저작물과 저작권은 저작권협약이 보호하는 저작물과 저작권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이나 새로운 저작권이 등장하면, 그러한 새로운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과연 저작권협약이 규정한 저작물과 저작권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저작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러한 저작물이 베른협약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규정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물론, 새로운 저작물이 협약에 규정된 저작물에 포함

[24]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떤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해서 그러한 새로운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면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주18) 협약의 해석상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보다 좁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내국민대우를 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19)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하나로 열거하거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한 베른협약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회원국들이 외국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국민대우를 해야 할 협약상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법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새로운 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저작권이 기존의 저작권법 내에 규정되어 있으면, 다른 회원국의 저작권법에 그러한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회원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서 자국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저작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베른협약은 명백히 저작자가 본국 이외의 다른 회원국이 현재 인정하고 있거나 장래에 인정하게 될 저작권을 당해 회원국의 내국민과 마찬가지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20) 그러나, 만일 저작권법 내에 규정된 새로운 권리가 통상의 저작권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거나 또는 전혀 저작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저작권이 저작권법과는 다른 별도의 입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새로운 저작권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위에서 살펴본 영국이나 스웨덴 등에서의 도서대여권(the Public Lending Right)이라거나 음반등에 대한 공중대여권 또는 법정이용허락으로 인한 이용대가를 받을 권리 등에 반드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주 21) 즉, 회원국은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사항 가운데에서도 저작물 이용허락 등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내국 저작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적용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은 저작권의 취득과 그러한 저작권의 범위 그리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직무창작이라거나 위탁창작 또는 저작권 양도라거나 저작물 이용허락 등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법이나 노동법에도 속하는 것으로 볼

[25]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협약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예컨대,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 모두 출판계약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저작권법하의 출판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반드시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에 의한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섭외사법에 따라서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될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하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될 저작물과 저작권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몇가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내국민대우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베른협약등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러 경우에 상호주의 부활을 허용해주고 있다. 예컨대, 보호기간의 비교(Comparison of terms)라거나,주22) 본국에서 의장으로 보호되는 응용예술이나 소위 "추급권(Droit de suite)"에 관해서, 그리고 번역권에 관한 유보를 선언한 회원국에 대해서주23) 또는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해주지 아니하는 비회원국의 국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복을 인정하는 한도에서,주24) 상호주의는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주25)

결론적으로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은 외국저작물의 보호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현재의 이들 협약 기준에 조금도 미달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른협약 등의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대여권이라거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또는 복제부과금 등의 제도는 외국저작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저작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보호의 국제동향으로서 (i) 새로운 저작물의 등장과 (ii) 저작권 종류의 다양화 그리고 (iii) 저작물 이용관계의 효율화 등은 한국의 저작권법의 해석 또는 개정에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만, 복제부과금 등의 제도는 복제 기기산업 등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이고, 우루과이협상이라거나 베른협약 등의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받게 되는 소위 저작권상품수출국으로 하여금 저작권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1)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은 중전과는 달리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방송에 관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의 저작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통상의 저작물의 일부로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1조(1) (b)항). 이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는 로마협약과 음반협약 등이 있다.

주2)

독일 1986년 저작권법 제64조 1항 및 제72조 3항.

주3)

Max W.Lau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48 Univ. Pitt. L. Rev. 1151(1987).

주4)

조약의 해석에 관한 Vienna Convention 제31조는 "조약은 조약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와 당해 조약의 적용에 관한 체결국간의 관행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

Stanislaw Soltysinski,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Aspects," 21 IIC 1 (1990) at 28.

주6)

부속협약을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는 1991년 11월 4일에서 8일까지 그리고 1992년 2월 10일에서 1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자세한 것을 Copyright (Feb., 1992) 31-53, (Mar., 1992) 66-82, (Apr., 1992) 93-121 참조.

주7)

Copyright (Mar., 1992) 68.

주8)

1971년 베른협약 제30조 2(b)항.

주9)

1971년 베른협약 제14조의3.

주10)

[Stephen M.Stewart and Hamish Sandison, International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London, Butterworths, 1989\), at 71.](#)

주11)

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주12)

William R.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Maxwell, 1989) at 361.

주13)

[Stephen M.Stewart and Hamish Sandison, Op. cit., at 71.](#)

주14)

1971년 베른협약 제14조 1항, 제14조의3, 제16조.

주15)

참고로, 베른협약에 관한 부속협약 시안은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시청각저작물 그리고 악보에 관한 대여권을 두고 있다. Copyright(Mar., 1992) 68.

주16)

독일 저작권법 제54조 2항.

주17)

Finance Act 1976.

주18)

Paul Katzenberger, "General Principles of the Berne and UCC," GATT or WIPO?(ed F.K.Beier and G.Schricker, Weinheim, VCH Pub., 1989) at 50.

주19)

David Vaver, "The National Treatment Requirements of the Berne and UCC," 17 IIC577(1986) at 584-85.

주20)

1971년 베른협약 제5조 1항.

주21)

Sam Ricketson, The Berne Convention: 1886-1986(London, QMC, 1987).

주22)

1971년 베른협약 제7조 8항; [1971년 세계저작권협약 제4조 4\(a\)항](#).

주23)

1971년 베른협약 제30조 2(b)항.

주24)

1971년 베른협약 제6조 1항.

주25)

한국 [저작권법 제3조 3항](#)과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160조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